##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9 발의연월일: 2024. 6. 17.

발 의 자:임이자·강대식·강명구

강민국 · 강선영 · 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미애

김민전 · 김상욱 · 김상훈

김석기 · 김선교 · 김성원

김소희 · 김승수 · 김예지

김용태 · 김위상 · 김은혜

김장겸 • 김재섭 • 김정재

김종양 · 김태호 · 김형동

김희정 • 나경원 • 박대출

박덕흠 • 박상웅 • 박성민

박성훈 • 박수민 • 박수영

박정하 • 박정훈 • 박준태

박충권 • 박형수 • 배준영

배혂진 • 백종헌 • 서명옥

서범수 · 서일준 · 서지영

서천호 · 성일종 · 송석준

송언석 · 신동욱 · 신성범

안상훈 • 안철수 • 엄태영

우재준 · 유상범 · 유영하 유용원 · 윤상현 · 윤영석 윤재옥 · 윤한홍 · 이달희 이만희 · 이상휘 · 이성권 이양수 · 이인선 · 이종배 이종욱 · 이철규 · 이헌승 인요한 · 임종득 · 장연욱 정동만 · 정성국 · 정연욱 정점식 · 정희용 · 조경태 조배숙 · 조승환 · 조은희 조정훈 · 조지연 · 최보윤 취수진 · 최은석 · 최형두 학경호 · 한기호 · 한지아 의원(10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제2장(중대산업재해)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현행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 시행 준비가 부족하고, 경영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법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사)은 현행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동 규정의 유효기간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설정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추가 로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 법률 제 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공사)
- 2.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공 사)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u>상</u> 시 근로자가 5	제3조(적용범위) <u>다음 각 호의 어</u>
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u>느 하나에 해당하는</u>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	
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u>&lt;신 설&gt;</u>	1.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미
	<u>만의 공사)</u>
<u>&lt;신 설&gt;</u>	2.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
	<u>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u>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억원 이
	<u>상 50억원 미만의 공사)</u>